

대구대학교와 영덕군간의 관·학 교류 협정서

대구대학교와 영덕군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학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과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학 교류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은 대구대학교와 영덕군간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포괄적인 협력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사항) 대구대학교와 영덕군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1. 대구대학교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영덕군에 지원한다
(자문·연구위원, 용역사업, 유물발굴·지표조사, 기술지원 등 군정발전 협력분야)
2. 대구대학교는 영덕군의 공무원, 군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3. 대구대학교는 영덕군의 영덕여성대학(사회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주관대학으로 참여한다.
4. 대구대학교는 영덕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학생 동아리 파견 등 행사에 참여한다.
5. 대구대학교와 영덕군은 대구대학교의 체육부 종목을 중심으로 스포츠 교류를 추진한다.
6. 대구대학교는 영덕군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에 협조한다.
7. 영덕군과 대구대학교는 시설물에 대하여 상호 편의를 제공한다.
8. 영덕군은 대구대학교 영덕연수원 운영에 행정지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9. 영덕군과 대구대학교는 상호발전과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3조(관·학 운영위원회 구성) 양 기관의 협정사항 실행을 위하여 필요시 양 기관의 관계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신의 성실의 원칙) 1. 본 협정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며,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의 대표자간 협의로 결정한다.

2. 이 협정서는 2부씩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5조(협정서의 효력) 이 협정서는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일방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5년의 단위로 자동연장 된다.

2000. 11. 13

윤덕홍

대구대학교 총장

윤 덕 홍

김우연

영 덕 군 수

김 우 연